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89
----------	-------

발의연월일 : 2022. 4. 26.

발의자 : 조정훈 · 김두관 · 민병덕
신정훈 · 오기형 · 윤미향
이재정 · 이형석 · 최연숙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판정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경도인지장애판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판정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경도인지장애판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